

##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8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1997년 월 일  
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법령질의 및 재송사건 증가로 고문변호사 업무증대
-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행정업무의 전문화 유도
- 고문변호사에게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제한하여 사명감 부여

### 주요골자

- 고문변호사 위촉을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함
-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
-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도소송 대리를 추가하고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

### 근거법령

-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제2조, 제3조, 제4조

- 붙임 1.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(안)  
2. 기타 참고자료 (신구조문대비표등)

##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2인이내”를 “3인 이내” 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업무)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 등 쟁송사건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
2. 도가 위임하는 쟁송사건

②고문변호사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다.

제4조 본문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